

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2022. 11. 29.

북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김진철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: 1860
- 나. 제출자: 성동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2년 11월 11일
- 라. 회부일자: 2022년 11월 18일

2. 제안이유

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확대 지원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관련 상위법령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 및 용어 통일
- 나. 서울시 전동보장구 수리비 보충지원에 따른 지원 기준 변경(안 제4조)
- 다. 민원 이용편의를 위한 별표 서식 수정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, 별첨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2. 9. 29. ~ 2022. 10. 1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결과, 행정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5) 신·구 조문 대비표, 별첨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확대 지원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.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상위법인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정됨에 따라 ‘보장구’를 ‘이동기기’로 변경하는 등 제명 및 조항을 수정하여 상위법령과 통일성 있게 일치시켰고
- 안 4조(지원대상 및 기준)에서는 서울시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따라 조례상 추가지원 단서를 신설하였으며,

-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신청서 별지 서식의 용어 등을 변경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작성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.

○ 법정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 등의 장애를 예방·보호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 2016년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(약칭 ‘장애인보조기기법’)이 제정·시행되었습니다.

○ 2022년 10월 기준 성동구 등록 장애인수는 약 11,119명이며 최근 6년간 전동 보조기기 교부 대수는 총 250대 이고 우리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 연 이용 인원은 3,934명으로(1일 평균 22명) 확인 되었습니다.

※성동구 등록장애인 현황 (단위: 명)

| 구 분 | 계 | 지체 | 시각 | 청각 언어 | 지적 | 뇌병변 | 자폐성 | 정신 | 신장 | 심장 | 기타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|-----|
| 등록 장애인 수 | 11,119 | 4,918 | 1,102 | 1,811 | 707 | 1,127 | 206 | 399 | 499 | 30 | 320 |

※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 운영 현황 (단위: 명)

| 구 분 | 보장구 수리 | 세척 | 충전 | 대여 | 교육 사업 | 수리 대회 | 연계 | 기타 | 합계 |
|-----|--------|-----|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|
| 계 | 256 | 183 | 70 | 2,520 | 450 | 30 | 150 | 275 | 3,934 |

※성동구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(단위: 개소)

| 구 분 | 계 | 장애인 복지관 | 의료 재활시설 | 직업 재활시설 | 주간 보호시설 | 공동 생활가정 | 수어 통역센터 |
|-----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시설수 | 14 | 1 | 1 | 4 | 3 | 4 | 1 |

○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 「도로교통법」상 자동차가 아닌 ‘보행자’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용 시 인도 위에서 주행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보도 여건상 보도가 아닌 도로로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때문에 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고가 난 후 수리 비용 때문에 재정적 부담을 느끼는 장애인이 많았는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·심리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○ 서울시 보조기기센터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보면

- 지원대상

- 지체/뇌병변/시각/청각/심장 장애인
- 소득수준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
- 차상위 장애인 :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 포함

- 교부 우선순위

-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
-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

- 재가장애인
 -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
- 장애인 보조기기 28종 품목 교부

| 구 분 | 내 용 |
|------------------|--|
| 지체·뇌병변장애 | 목욕의자, 휴대용경사로, 보행차, 좌석형 보행차, 탁자형 보행차, 독립형 변기 팔지지대 및 등지지대 |
| 지체·뇌병변장애 | 기립훈련기, 이동변기,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, 식사도구(칼-포크), 젓가락 및 빨대, 컵 및 받침접시, 음식보호대, 환경조정장치 |
| 지체·뇌병변·심장·호흡장애 | 미끄럼 보드,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, 장애인용의복,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|
| 지체·뇌병변·심장·호흡장애 | 장애인용의복 |
| 심장장애 |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, 외상용 욕창예방보조기기 |
| 시각장애 | 녹음 및 재생장치, 독서확대기, 문자판독기, 음성유도장치(음향 신호기리모콘), 음성시계 |
| 청각장애 | 시각신호표시기, 헤드폰(청취증폭기), 진동시계 |
| 뇌병변·발달·청각·언어 장애인 | 대화용장치 |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안을 통일성 있게 수정하고 서울시 전동이동기기 수리비 추가 지원에 따라 수리 지원 비용을 현실화하여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그 밖에 한자어를 한글로 변환 하는 등을 「알기 쉬운 법령기준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절하게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.